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행정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함.

4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통합
-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 변경

(2년 거치 1년 상환 → 3년 거치 2년 상환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'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은 통폐합하는 등
'94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통합운영 하므로써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

- . 일반회계로 통.폐합함에 있어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각조문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제9조 제4항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책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을 2년거티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